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관련
번호	1913

제안년월일 : 2017년 9월 4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의회가 의결할 의안의 제출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함(안 제18조 제3항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제3항 중 “20일전까지”를 “15일전까지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20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10일전까지”를 “15일전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<u>10일전</u>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<u>15일전</u>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